

#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수정동의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'99. 6. 17  
제 출 자 : 유 동 찬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에 대하여 수시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
- 불합리한 시험거부 조항 삭제

## 2. 주요 골자

- 제4조 제2항 : 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,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,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한다. 다만,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- 제7조 : 제목 “거절”을 “거부”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.

##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(안)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,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,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한다. 다만,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
(안) 제7조의 제목중 “거절”을 “거부”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.

##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명 : <u>충청북도농촌진흥원</u> <u>시험·분석및검정에</u> <u>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농촌진흥원(이하“<u>진흥원</u>”이라 한다)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·<u>분석 및 검정</u>(이하“<u>시험등</u>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<u>시험</u>”이라 함은 <u>농업 기술, 작물, 원예, 축산등</u>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, 능력,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. 2. (생략) 3. “<u>검정</u>”이라 함은 <u>농업용 기자재의 구조, 성능 및 안전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조사·측정하여 <u>확인하는 것을</u> 말한다.</p>	<p>제명 : <u>충청북도농업기술원</u> <u>시험및분석에관한조</u> <u>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<u>농업기술원</u>(---“<u>기술원</u>” ---)----- ----- <u>및분석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1. ----- <u>농작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&lt;삭제&gt;</p>	<p>제명 :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시험등의 의뢰) ①시험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시험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의 장(이하“<u>진흥원장</u>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험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분석 및 검정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시험등의 의뢰) ①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업기술원</u>-----( <u>“기술원장”</u>-----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분석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시험등의 의뢰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신청기간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<u>분석 및 검정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,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<u>다음 각호의 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신청기간) ①----- ----- <u>분석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신청기간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<u>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,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한다. 다만,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1. 여름작물은 11월 1일~12월 15일, 겨울작물은 6월 1일~7월 15일</p> <p>2.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은 제1호의 시기 및 2월 1일~2월 말일과 8월 1일~8월 31일</p> <p>제5조(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<u>진흥원장</u>은 [별표1]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기계·기구의 제공 및 반환)</p> <p>①<u>진흥원장</u>은 <u>진흥원</u>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·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·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<u>진흥원장</u>은 시험등이 끝난 즉시 기계·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)</p> <p>제5조(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) ----- ----- <u>기술원장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(기계·기구의 제공 및 반환)</p> <p>①<u>기술원장</u>-- <u>기술원</u>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 <u>기술원장</u>----- ----- -----</p>	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제5조(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기계·기구의 제공 및 반환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③ (생략)</p> <p>제7조(시험등의 거절) ① 시험등의 의뢰를 받은 <u>진흥원장</u>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을 거절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시험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진흥원이</u>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·기구등으로써 시험등을 할 수 없을 때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<u>진흥원장</u>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실과 함께 대상물품을 찾아가도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결과통보) <u>진흥원장</u>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,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후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시험등의 거절) ①-----<u>기술원장</u>-----</p> <p>1. -----<u>기술원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기술원</u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기술원장</u>-----</p> <p>제8조(결과통보) <u>기술원장</u>-----</p>	<p>제7조(시험등의 거부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 <p>1. (개정안 제2호와 같음)</p> <p>2. (개정안 제3호와 같음)</p> <p>3. (개정안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결과통보) (개정안과 같음)</p>

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10일이내에, <u>분석 및 검정</u>의 경우에는 <u>분석 및 검정</u>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<u>분석</u>----- -----<u>분석</u>----- ----- -----</p>	
<p>제9조(성적증명서 발급) ① 시험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<u>진흥원장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<u>진흥원장</u>은 당해 시험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험등을 의뢰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9조(성적증명서 발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기술원장</u>----- ----- ②<u>기술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9조(성적증명서 발급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시험등의 결과 표시) (생략)</p>	<p>제10조(시험등의 결과표시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시험등의 결과표시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 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[별표2]의 시험의뢰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로, <u>분석 및 검정</u>의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분석</u>----- ----- -----</p>	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		개정안			수
②(생략)			②(현행과 같음)			
제12조(수수료의 면제) (생략)			제12조(수수료의 면제) (현행과 같음)			제12조(수수료의 면제) (개정안과 같음)
[별표1]시험·분석 및 검정 업무처리절차			[별표1]--- 및 분석----- -----			[별표1] (개정안과 같음)
구분	신청인	처리기관 농촌진흥원	구분	신청인	처리기관 농업기술원	
분석(검정) 실제 소요시간			분석 -----			
분석(검정)완료 후 즉시			분석 -----			
[별표2]시험의뢰 및 분석· 검정 수수료			[별표2] ----- 분석-			[별표2] (개정안과 같음)
2. 분석 및 검정 의뢰 수 수수료			2. 분석 ----- -----			
[별표3] (생략)			[별표3] (현행과 같음)			[별표3] (개정안과 같음)
[별지 제1호 서식]			[별지 제1호 서식]			[별지 제1호 서식]
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석의뢰신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검정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			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석의뢰신청서 <삭제> -----농업기술원----- 및			(개정안과 같음)
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 제3 조의규정에 의하여 시험(분 석,검정)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귀하			분석----- -----(분석) ----- ----- ----- -----농업기술원장 -----			



현행			개정안			수정안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			-----			
구분	신청인	처리기관 농촌진흥원	구분	신청인	처리기관 농업기술원	
<u>분석(검정) 실제 소요시간</u> <u>분석(검정)완료 후 즉시</u>			<u>분석</u> ----- <u>분석</u> -----			
[별지 제2호 서식]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석의뢰신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검정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 <u>분석및검정의뢰규칙 제8조</u> 의규정에 의하여 시험(분석, 검정)결과를 위와 같이 통 지합니다. 년 월 일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귀하			[별지 제2호 서식]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석의뢰신청서 <삭제> ----- <u>농업기술원</u> ----- <u>및분석</u> ----- <u>(분석)</u> ----- ----- ----- <u>농업기술원장</u> -----			[별지 제2호 서식] (개정안과 같음)
[별지 제3호 서식]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석의뢰신청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검정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· <u>분석및검정의뢰규칙 제9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(분 석,검정)성적서를 발급받고 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귀하			[별지 제3호 서식] 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석의뢰신청서 <삭제> ----- <u>농업기술원</u> ----- <u>및분석</u> ----- <u>(분석)</u> ----- ----- ----- <u>농업기술원장</u> -----			[별지 제3호 서식] (개정안과 같음)
첨부서류: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(분석,검정)의뢰인 의 동의서 1부			----- <u>(분석)</u> ----- -----			